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41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진선미 · 이학영 · 이수진
이해식 · 정태호 · 임호선
신정훈 · 임오경 · 이동주
윤관석 · 최혜영 · 고용진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1억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5천만원, 소기업(小企業)은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한도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u>5천만원</u>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u>1억원</u>)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 ----- ----- ----- <u>1억원</u>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中企業)은 <u>5천만원</u> , 소기업(小企業)은 <u>1천만원</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